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42(2019.1.24.)호와 제2019-2558(2019.9.26.)호로 공고 및 재공고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도심부 주거 주용도 및 주거비율 완화에 관한 사항
-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확보기준에 관한 사항
- 생활SOC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

2. 열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2133-4635)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인터넷 주소 :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list/1

나. 자치구

공람장소	전화번호	공람장소	전화번호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73	중 구 도심재생과	02)3396-5772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03	성동구 주거정비과	02)2286-6559
광진구 주택과	02)450-1380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293
종량구 도시개발과	02)2094-2202	성북구 주거정비과	02)2241-3123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52	도봉구 주택과	02)2091-3522
노원구 도시관리과	02)2116-3861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05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02)330-1614	마포구 도시계획과	02)3153-9362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3	강서구 주택과	02)2600-6150
구로구 주택과	02)860-2962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1553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02)2670-3538	동작구 도시개발과	02)820-9265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353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9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03	송파구 주거사업과	02)2147-2899
강동구 도시계획과	02)3425-6052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위 열람장소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4호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

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장

I.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1번지 일원
- 면 적: 5,663㎡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19년 10월 0일

3. 사업의 종류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주식회사 두진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4(신봉동)
- 대표자 성명: 박희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동대문구 회경동	281	1	대	4,066	[위탁자] 주식회사 두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4(신봉동)	100%	-	-	-				
2		281	11	대	208										
3		281	12	대	212										
4		281	13	대	212										
5		281	14	대	212										
6		281	15	대	212	[수탁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7		281	16	대	149										
8		281	53	도	184										
9		281	69	대	165										
10		308	13	대	43										
계					5.663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본번	부번											
1	동대문구 휘경동	281	1	대	공장	세멘부록조	1962.01.15	284.83	-	1	[위탁자] 주식회사	-	-	-
2				대	공장, 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세멘벽돌조	1963.11.07	3,834.83	-	5	두진 [수탁자]			
3				대	공장	철근콘크리트	1966.07.29	862.98	-	2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								4,982.64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휘경동 281-1번지 일원	5,66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 사유
-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5,663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1)와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02-2127-47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1번지 일원
- 면 적: 5,663㎡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포함)

- 명 칭: 주식회사 두진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4(신봉동)
- 대표자 성명: 박희순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1년
-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주택건설용지	5,446	96.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기반시설용지	217	3.8	사업지 동측 도로
합 계	5,663	100.0	-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5. 인구·주택수용계획

- 1) 수용인구: 1,062명
- 2) 주택건설계획: 582세대

구분	주거형	세대수 (세대)	비율 (%)	수용인구 (인)	비율 (%)	비고
공공 임대주택	15A TYPE	40	6.9	40	3.8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33B TYPE	40	6.9	106	10.0	
	소계	80	13.8	146	13.8	

구분	주거형	세대수 (세대)	비율 (%)	수용인구 (인)	비율 (%)	비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A TYPE	251	43.1	251	23.6	
	33B TYPE	196	33.7	519	48.9	
	33B TYPE	34	5.8	90	8.5	
	33B TYPE	10	1.7	27	2.5	
	33B TYPE	11	1.9	29	2.7	
	소계	502	86.2	916	86.2	
합 계		582	100.0	1,062	100.0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공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동대문구 회경동 281-1번지 일원	건축면적 770.0839㎡	동대문구 기부채납
신설	공공업무시설	청년커뮤니티	동대문구 회경동 281-1번지 일원	건축면적 886.2480㎡	동대문구 기부채납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대상지 내 건축물은 현재 공장 및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녹지공간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며, 산림지역, 조경녹지 등은 분포치 않음
- 사업시행에 따른 조경녹지 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마련, 녹지체계 구축 등 환경보전계획을 통해 도심지 내 생태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임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 내 지형을 고려하여 살수설비, 세류시설, 가배수로, 침사지 등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계획·설치하여 각 공사 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이행
- 지구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하여, 주변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임
-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 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제재생략)

9. 다른 법률에 다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동대문구 회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회경동 281-1번지 일원	5,663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면적(㎡)	결정 사유
-	동대문구 회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5,663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여건이 우수한 대상지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663	-	5,663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 4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 4,368	164	2.9
	준주거지역	증) 4,411	5,499	97.1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회경동 281-13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3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용도지역 종세분 변경
-	회경동 281-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4,368	

(2) 용도지구 결정(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동대문구 회경동 281-1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770.0839㎡	동대문구 기부채납
신설	공공업무시설	청년커뮤니티	동대문구 회경동 281-1번지 일원	건축연면적 886.2480㎡	동대문구 기부채납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획지에 관한 사항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동대문구 회경동 281-1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대문구 회경동 281-1 일원	-	증) 5,446	5,446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	· 획지 신설 - 면적 : 5,446㎡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획지 지정

(2)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사항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계획내용	비고
용도계획	지정용도	A	· 공동주택주1)(주거복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제외),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B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 주거 및 비주거부문 용도 지정 · 불허용도 : 주거환경 위해용도 불허용도 지정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지정용도로 결정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불허용도계획

(2)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19% 이하(주1)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 기본용적률 : 준주거지역, 제3종·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중평균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높 이	· 최고높이 96m 이하	· 망우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적용(간선변 최고높이 96m 이하)

주1) 획지 내 둘이상의 용도지역이 포함된 경우로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산정방식 적용

■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용적률	· 기본용적률 /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적용
높 이	· 최고높이 96m 이하	· 망우로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침 적용(간선변 최고높이 96m 이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54호 '시흥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2006.3.16.)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 부지면적 중 505.35㎡(9.28%)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면적 : 506.56㎡(9.30%)	기본용적률 419.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용도별 비율	· 15%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9.18% : 10.82% ※ 공 공 임 대 주 택 : 8 0 세 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502세대		
	· 85%이상			
주택 건설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15.82㎡, 33.68㎡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15.82㎡, 32.23㎡, 33.58㎡, 33.68㎡계획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내용	비 고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 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친환경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 필수 주민공동시설 총 면적 : 909.3750㎡ [(5 8 2 세 대 - 2 9 1 세 대) × 2.5 × 1.25]	• 지상3층 및 실외공간 : 913.2503㎡ - 용도 : 독서실, 공용세탁실, 임대 관리센터, 작은도서관, 주민 운동시설(실내) (실외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 시설	

주1) 공공기여면적은 사업대상지 중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이 상향되는 부지(준주거지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를 기준으로 산출 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구 분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망우로) : 대지경계로부터 3m • 이면도로변(망우로12길) : 대지경계로부터 2m • 이면도로변(망우로10길) : 대지경계로부터 1m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도로변 건축한계선 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보행공간 확보
섬지형 공지	• 대상지 북측 망우로 가각부에 섬지형 공지 조성	위치 지정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폭 30m이상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망우로변 약 79m)	

라) 공공기여 계획

구 분	면적	기부채납 내용	기부채납 면적	비율(주4)	관리청
공공임대주택 ^{주1)}	전용면적 1,500.9971㎡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506.56㎡	9.30%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주2)}	건축면적 1,180.5246㎡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161.73㎡	2.97%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건축면적 770.0839㎡	공공업무시설 및 부속토지	360.39㎡	6.62%	동대문구청
청년커뮤니티 ^{주3)}	건축면적 886.2480㎡	공공업무시설 및 부속토지	423.86㎡	7.78%	동대문구청
합 계			1,452.54㎡	26.67%	

주1) 기본용적률 부여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3장제2절3-2-1. '라.기타 1), 가) 준용)

주2) 추가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3장제2절3-2-1. '라.기타 1), 나) 준용)

주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1천㎡미만)에 한함

주4)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지면적(5,446.0㎡)에 대한 기부채납(순부담) 비율임

※ 향후 관련부서 협의 결과 및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3.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집중호우 발생시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계획하고, 지하공간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층 침수피해 예방

2) 지반재해

- 지하굴착 공사시 지반거동 등에 의한 인접 지반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I.P 공법(흙막이 벽체), Earth Anchor・STRUT 공법(지지형식)으로 흙막이를 실시토록 계획

3) 지진재해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 1) 토지세목조서 : 해당 없음
- 2) 물건조서 : 해당 없음
- 3) 토지취득 방법: 해당 없음
-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해당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관리청)
어린이집	동대문구 회경동 281-1일원	건축연면적 770.0839㎡	동대문구청
청년커뮤니티	동대문구 회경동 281-1일원	건축연면적 886.2480㎡	동대문구청

가) 계획기준 및 근거

- 공공시설은 동대문구로 귀속되며, 동대문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 공공시설의 세부 운영계획(관리청 지정, 시설운영계획 등)은 동대문구 관리부서와 협의 후 결정
- 세부기준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시설 부지가액 및 표준건축비(건축공사비)는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여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주택법」 및 「건설기준 관리규칙」에 의거 서울시와 협의하여 해당 지자체인 동대문구청 주택과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공급면적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고
	면적(㎡)	구성비(%)			
합 계	5,663	100.0	-	-	-
주택건설용지	5,446	96.2	자체사용	승인 후	-
기반시설용지	217	3.8	-	승인 후	-